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887호)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805호)

2022.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성일중의원 대표발의(2114887)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기업도시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안 제38조) ...	3
II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2115805)	6
1. 제안경위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3. 검토의견	7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안 제26조제3항)	7
※ 참고 :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비교	9

I. 성일중의원 대표발의(2114887)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성일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2. 03. 17.

다. 회 부 일 : 2022. 0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를 지원하고,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의 임직원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이 부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

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3. 검토의견

가. 기업도시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3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 ----- ----- -----외국교육기관을----- ----- -----. ----- -----.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¹⁾ 중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²⁾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지방이주기업 자녀들의 학교선택의 폭을 좁혀서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가족단위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된 새만금사업지역³⁾과 비교할 때, 관광중심형 기업도시인 영암·해남 기업도시 및 태안 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새만금사업지역과 유사성이 높다는 의견⁴⁾이 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 유치에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기업도시 유입도 촉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⁵⁾이 있다고 보임.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의견임.

5)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남도도 같은 의견임.

다만, 교육부는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교육기관은 예외적으로 설립이 허용된 것으로서, 공교육인 초·중등교육의 특성 및 내국인 학생이 입학 가능한 높은 학비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확대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여 전국 4개 기업도시의 내·외국인 학령인구 유입 등 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기업도시 인근 학교와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기업도시 인근 학교와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교육인 초·중등교육의 특성, 기업도시의 교육 수요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Ⅱ. 이종배의원 대표발의(2115805)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2. 06. 03.

다. 회 부 일 : 2022. 07.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등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3. 검토의견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안 제26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 는 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 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 -----.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 는 기업 외에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대해서도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를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해서도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함으로써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서 타당하 고6), 별표에 규정된 법률 외에 국유재산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7)

6) 국토교통부 역시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나아가 기업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규정이 이미 마련⁸⁾되어 있어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78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4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참 고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비교

구분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근거법령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 기업도시법 미군공여구역법 행복도시법 국제과학벨트법	제주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설립자격		비영리 외국 학교 법인	국가, 제주도, 국내외 법인 (영리법인 포함)	외국인,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학교 법인
설립 요건	설립목적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	국민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교육, 해외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
	설립 가능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행정중심복합도시(고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 기업도시(고등), 새만금지역, 평택시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전국 설립 가능
	설립승인	(제주도외) 초·중등 : 시도교육감, 고등 : 교육부장관 (제주도) 초·중등 : 제주도교육감, 고등 :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 단, 영리법인이 학교 설립시 교육부장관 동의 필요	교육감
입학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외국인의 자녀, 3년 이상 해외 거주 내국인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귀화자 자녀
내국인 입학 비율		(초·중등) 총 정원의 30% * 시도교육규칙으로 50% 확대 가능 (고등) 제한 없음	제한없음	학생 정원의 30% * 시도교육규칙으로 50% 확대 가능
운영과정		유치원, 초·중·고, 대학	유·초·중·고	유·초·중·고
설립운영현황		(초·중등 2개교) 채드웁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 (고등 5개교-인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SBU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켄트대	한국국제학교(KIS) NLCS jeju, BHA, SJA jeju	외국인 유치원(2개교) 외국인 학교(38개교)

자료 : 국토교통부